

서울을 바라봅니다
시민을 생각합니다

교육감제출 의안 접수 및 회부



2019. 10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

교육감제출 의안 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안 (조례안 1, 동의안1)

연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요 지	제 출 자 (소관위원회)	비 고 (제출일)
1 (1197)	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2020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, 중학교 2개교, 유치원 17개원을 신설하고, 초등학교 1개교, 중학교 1개교, 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며,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 학교 1개교의 교육지원청·자치구명을 정정하려는 것임	교 육 감 (교육)	2019. 10. 16.
2 (1198)	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교구성원들을 위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보·자료제공, 설립상담, 교육 및 컨설팅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서,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,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- 위탁기간 : 2년 (2020.2 ~ 2022.1월) - 위탁비용 : 318,300천원 (2년간) ※ ('20년 예산) 158,000천원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,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	교 육 감 (교육)	2019. 10. 16.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 임 : 관련 의안 1부. 끝.

2019. 10. 22
의장